

#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3. . .
발 의 자	김근한 의원 외 16명

#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3. . .

발 의 자: 김근한·강승수·김낙관·김민성  
김원섭·김재우·김정도·김춘남  
박교상·소진혁·신용하·양진오  
이상호·이지연·장미경·정지원  
추은희 의원 (17명)

## 1. 제안이유

우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상호 상생관계를 유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1사1경로당 정의 규정(안 제2조제7호)
- 나.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신설(안 제15조의2)

## 3. 조례안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1)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나. 부서검토: 노인장애인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라. 기     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1사1경로당 자매결연”이란 경로당과 기업·기관·단체 등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및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1사1경로당 자매결연)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사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   략)</p> <p>6. 삭   제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“1사1경로당 자매결연”이란 경로당과   기업·기관·단체 등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및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상호 상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<u>제15조의2(1사1경로당 자매결연)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1사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u></p>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3. ~ 4. (생략)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~ 다. (생략)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~ 차. (생략)

3. ~ 7. (생략)

# 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 : 노인장애인과

<b>조 례 명</b>	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거 법령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노인복지법 제 36조</li> <li>▪ 지방자치법 제 13조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사 1경로당 정의 규정(제2조 제7호)</li> <li>○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규정(제15조의2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규정(제15조의2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존의 제15조의2가 이미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함. 따라서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규정은 제15조의3으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어야 함.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 검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대효과: 1사 1경로당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로당 간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음. 지역사회의 자원과 지원을 경로당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, 노인들이 지역사회와 더 가깝게 연결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.</li> <li>○ 소요예산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</li> <li>○ 문 제 점: 경로당과 자매결연된 회사마다 재정상황이나 지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원이 경로당에 형평성 있게 분배되지 않고 특정 경로당에만 지원이 집중될 수 있어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참여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.          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매결연 사업의 운영과 자원 분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.</li> </ul>	

# 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-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할 때는 협약식 및 홍보활동에 따라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. 이러한 비용은 현판 및 현수막 제작, 홍보물 제작 등의 활동을 포함함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해당함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 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 어려움. 또한 사업 추진 시 자매결연된 파트너들과의 협약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일정하지 않아 비용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움.

### 4. 작성자

-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하경호(☎054-480-5155)